

TTIP(미·EU FTA)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상 동향과 주요 쟁점

유새별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sbyoo@kiep.go.kr, Tel: 3460-1083)

차 례 ● ● ●

1. TTIP(미·EU FTA) 추진 배경
2. TTIP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논의 동향
3. 맺음말

주요 내용 ● ● ●

- ▶ 미국과 EU 양국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경쟁력제고에 목적을 두고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7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됨.
 - TTIP 주요 협상 안건은 시장접근성, 규제의 정합성과 규범 세 가지로 양측은 관세 철폐, 서비스 및 정부 조달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규제·표준의 협력과 정합성 증진에 관해 상호 합의함.
- ▶ 미국과 EU는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기술관련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의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TTIP 협상에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양국은 TTIP의 잠재적 효과 중 상당 부분을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를 통해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타 FTA와 달리 산업규제와 기술규제, 현지화 무역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등을 협상 의제로 포함함.
 - 과거 양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와 비교해볼 때 TTIP에서는 TBT 논의 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음.
- ▶ 고위급 작업반(HLW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향후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규제의 상호인정 또는 합의를 통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동의하였으나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임.
 - 투명성, 기술규정의 제·개정, 표준화 수립,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
 - 그중 자동차, 화학약품, 의약품 세 가지 산업에 대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나,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호인정 또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 TTIP에서의 TBT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 표준 및 기준이 합의될 경우, 양측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 대미/대EU 수출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를 동시에 체결한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서 TTIP 협상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TTIP(미·EU FTA) 추진 배경

■ 미국과 EU 양국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경쟁력제고에 목적을 두고 TTIP¹⁾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2월 TTIP 협상시작의 공식화를 선언함.

- 양국간 FTA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양측의 고위급 대표들이 처음 제안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2013년 7월 TTIP 협상을 시작하기에 이룸(표 1 참고).
- TTIP 협상은 3차 협상까지 빠르게 진전되었고 2014년 3월 12~14일 기간 동안 4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5차 협상은 2014년 상반기 내 워싱턴에서 예정됨.

■ TTIP에서는 시장접근성(market access), 규제정합성(regulatory convergence)²⁾과 규범(rules) 세 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

- 공식 협상을 통해 시장접근성, 규제 및 규범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양측은 관세 철폐,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규제·표준의 협력과 조화 증진에 대해 상호 합의함.
- 시장접근: 관세 철폐(양허 교환 완료), 서비스, 공공조달(양허 교환방식 논의 중)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 TBT(상호간 제출된 초기입장보고서에 대한 논의), SPS(초안 작성 배경에 관한 논의)
- 규범: 노동 및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 측 희망사항),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 특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및 화학과 같은 특정산업³⁾ 내 양측간 규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⁴⁾는 해당 특정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더함(European Commission, 2009).

1)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으로 미국과 EU 간 FTA를 칭함.

2) 규제의 정합성 향상은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조화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식품 안전 또는 동식물 보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표준, 시험 및 인증과 같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도 포함함.

3) Shayerah Ilias Akhtar and Vivian C. Jones(2014),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 23.

4) 2009년 12월 European Commission에서 측정한 규제자유화효과 추정치에 따르면, 미·EU 간의 규제 차이와 그 밖에 비관세조치가 50% 완화 되더라도, EU의 GDP는 2018년까지 0.7% 정도 증가하여 EU 경제에 연간 1,580억 달러의 잠재적 이익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우 이보다 낮은 0.3%(연간 약 530억 달러) 정도의 GDP 상승이 예측됨.

표 1. TTIP 협상 추진 과정

	협상 추진 경위
1995년	▶ 독일 및 영국 외무부 장관, 미국 AFL-CIO 회장 등 양 지역 재계가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함.
1998년	▶ EU가 ‘신범대서양 의제((New Transatlantic Agenda)’ 비전을 제시
1998년	▶ 양측은 통신기기, 제약 제조 과정 등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의
2007년	▶ 양측은 규제장벽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급 범대서양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설치
2011.11.28	▶ 미·EU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일자리와 성장을 향한 고위급 작업반(HLWG: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 설치
2012.6.19	▶ HLWG 중간보고서 제출
2013.2.4	▶ EC가 유산에 의한 소고기의 오염제거처리와 양돈용 미국산 돼지 수입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여 협상 개시의 걸림돌 제거
2013.2.11	▶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 ▶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 높은 TBT(및 SPS) Plus를 포함할 것임을 강조
2013.2.12	▶ 오바마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TTIP 협상출범 공식화 의사를 표명 ▶ HLWG 최종보고서 제출
2013.2.13	▶ 양측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 및 TTIP 협상시작 공식화
1차 협상 (2013.7.8~12, 워싱턴 DC)	▶ 양측의 관세 및 기술표준 등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 ▶ 양측의 규제 및 기준 통일로부터 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접근성에 대한 논의 ▶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자동차 및 화학제품 산업 분야는 양측 모두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관세 철폐에 큰 문제없이 합의될 것이라고 전망
2차 협상 (2013.11.11~15, 브뤼셀)	▶ TBT Plus(기존 TBT 규제분야 외 서비스, 공공조달,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분 등 포함) 구성방안 논의 ▶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 이슈 등을 논의 ▶ 기술 장벽에 대한 규제정합성 및 양측의 규제조화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협의함 (특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 농약, ICT 및 자동차와 같은 산업 관련 규제 및 규정이 주요 협상 대상임)
3차 협상 (2013.12.16~20, 워싱턴 DC)	▶ 시장접근성(Market Access), 규제정합성(Convergence in Regulatory), 규범(rules) 3대 협상 분야를 확정 후 준비 작업을 시작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산업에서 제도시설검사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성이 논의됨. ▶ 화학분야는 화학물질 상호 평가 인정문제가 논의되었음.
4차 협상 (2014.3.12~14, 브뤼셀)	▶ 시장접근성 강화, 규제 및 규범 3대 협상 분야에 대한 심층 논의 ▶ SMEs(중소기업)이 TTIP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 모색 ▶ 범대서양 양측에서의 직업과 성장 확대에 대한 논의 ▶ 양측 교류 시 존재하는 지속발전가능성,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심층 논의 ▶ 에너지, 원자재교역(EU 측에서 TTIP 협상 안건으로 포함시키길 희망) ▶ 무역원활화를 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능률화시키는 방안 논의 ▶ 5차 협상은 2014년 상반기 내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

자료: 김정수(2013),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을 토대로 저자 재정리.

■ TTIP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비관세장벽,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FTA임(표 2 참고).

- 미국과 EU 양측은 TTIP의 잠재적 효과 중 상당 부분이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를 통해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타 FTA와 달리 산업규제와 기술규제, 현지화 무역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등을 TTIP의 협상 의제로 포함함.

- 2014 USTR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과 규제 안전에 대하여 TTIP 내 새로운 규범과 의무의 제정을 통해 양측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표 2. TTIP 협상 안건

협상 안건			
1. 농업	위생검역조치(SPS) 유전자변형생물체(GMO)	8.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저작권 보호 특히 기업기밀
2. 서비스	금융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우	9. 산업 규제 및 기준	무역상 기술장벽 (TBT) 표준화 수립 범대서양 규제 협력
3. 디지털 거래 및 전자상거래	디지털 정보 흐름 정보 보호	10. 상품 및 농업에 대한 관세	
4. 정부조달		11. 현지화 무역장벽	
5. 투자		12. 국영기업	
6. 노동 및 환경		13. 중소기업	
7. 무역원활화		14. 분쟁해결	

자료: Shayerah Ilias Akhtar and Vivian C. Jones(2014),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 미국과 EU는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각 국가마다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보고 TTIP 협상에서 기술규제, 제품표준, 시험 및 인증과 같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TTIP 협상에서는 TBT와 더불어 표준화 수립, 범대서양 규제협력 등을 포함한 산업규제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챕터를 구성함.
- 과거 양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와 비교해볼 때 TTIP에서는 TBT 논의 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TTIP 협상 안건 중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TBT 등 산업 규제 및 기준에 관한 논의 동향과 양측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함.

2. TTIP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논의 동향

가. TBT 논의 현황

■ 본격적인 TTIP 협상에 앞서 미국과 EU는 양국의 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일자리와 성장을 향한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⁵⁾’을 설치하고 2013년 3월 TTIP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TTIP 협상 의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 양측은 TTIP 협상에서 양국의 상호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 이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이슈를 다루고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TBT 안전과 관련해서는 1) 규제의 일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핵심 규율, 2)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조항(TBT), 3) 위생검역조치(SPS), 4) 각 산업별 규제 간 호환성 증진을 위한 조항, 5) 향후 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춘 협약 체계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함.

■ (범대서양 규제 협력) 양측은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기관 간의 수평적(horizontal) 정보교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⁶⁾ 체결 및 표준화 수립 등을 통하여 특정 산업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는 등 범대서양 규제협력을 추진해왔으며(글상자 1 참고), TTIP 협상은 이러한 양자간 규제협력의 강화 및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글상자 1. 범대서양 규제 협력의 배경

- (1998년) 양측 규제기관은 대서양경제협력(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⁷⁾ 합의 이후 수평적 정보 교환에 적극 관여함.
 - 특히 전화기기, 여가공예, 의료기기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시험 및 인증요건에 대해 MRA 체결
- (2005년) 양측 고위관리들은 고위급 규제협력 포럼(High-Level Regulatory Cooperation Forums)에 참여함.
 - 양질의 규제를 촉진하고, 규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을 수립
- (2007년)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는 규제협력에 적극 개입하여 종전의 논쟁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임.
 - 전기자동차 및 나노기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시험 방법 및 규제적합성을 모색하는 데 협동하여 양측 관할기관에 적용된 규칙과 표준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동의
- (2011년) 양측은 상호항공안전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에 합의함.
 - 해당 협정을 통해 내공성 승인 및 민간항공관련 제품 모니터링, 환경시험, 정비시설의 모니터링 및 승인 등에 중점을 둔 민간 항공기 승인에 대해 양자간 협력이 이루어짐.

자료: Shayerah Ilias Akhtar and Vivian C. Jones(2014),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 (무역상 기술장벽) 양측 수석대표는 TTIP 협상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각국의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평적 규제원칙(Horizontal Principles)’을 논의하였으며, 기존의 WTO/TBT의

-
- 5) 고위급 작업반(HLWG)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대서양무역투자 증진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공식 출범하였음.
 - 6) 상호인정협정(MRAs)은 상대국에서 실시하는 제품·서비스·공정 등에 대한 시험·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 맺은 당사국간에 상대국의 승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임.
 - 7) 대서양경제협력(TEP)은 효과적인 규제협력을 위해 양측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지침 확인 및 실행을 필요로 함.

확대형인 ‘TBT-Plus’를 구성함.

- 수평적 규제원칙(Horizontal Principles)을 유지하고자 WTO/TBT 협정문에 명시된 규제분야 외에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서비스, 공공조달까지 포괄한 이른바 ‘TBT-Plus’ 달성에 목표⁸⁾를 두고 있음.
- HLWG 보고서에 따르면 ‘TBT-Plus’의 내용을 포함한 챕터의 목적은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 및 관련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 보다 높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규제간 조화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검사 및 인증 기준을 폐지하고 양측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 신뢰를 쌓으며, 적합성 평가 및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세계적인 범위로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함.⁹⁾

■ (표준화 수립) 양측은 기본적으로 소비자후생과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시장 경제를 제공하는 데 공동 목표를 두고 있으나, 표준 및 규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소비시장 특징을 이유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무역장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예를 들면 대부분의 유럽 소비자들은 ‘자연적으로 생산된’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 소비자는 GMO 음식과 같은 대체 농업식품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등 대조적인 선호성향을 보임.
- 이러한 이유로 여러 경제학자들은 규제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조적 입장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¹⁰⁾
- 또한 다국적 기업은 양측의 서로 다른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해 생산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복되는 규제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함.

■ (시장접근성 강화) 본질적인 규제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실제 수준과 관계없이 양측은 모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 미국과 EU 자국 내 시장 기능에 대하여 기본 사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공동목표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 세 가지 안전에는 1) 특히 중소기업(SMEs)의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과 EU의 규제 장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과 더불어 규정집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한 여부, 2) 미국 내 연방차원 또는 EU 내 지역차원의 TBT 관련 조치들과 시장 접근을 위한 요구사항의 타당성, 3)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 설립 등이 고려대상으로 포함됨.

나. TBT 관련 주요 쟁점

■ HLWG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간 향후 규제의 조화 및 정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협상 메커니즘의 수립과 규제의 동등화 및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의 부담 완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8) ‘TBT-Plus’ 달성 목표에는 양자간 TBT 이슈를 다루는 협력 및 대화체의 메커니즘 설립 또한 포함됨.

9) “HLWG Final Report”(2013. 2. 11).

10) Ibid.

공감하고 있으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임.

- TBT 분야 조항들간에 전반적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입장보고서(Initial position paper)¹¹⁾에 명시된 조항들과 견해 차이를 표명하게 될 경우 그에 합당한 양자간 동의를 필요로 함.
- 투명성, 기술규정의 제·개정, 표준화 수립,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음.
- 그중 자동차, 화학약품, 의약품 세 가지 산업에 대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나,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측은 상호인정 또는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글상자 2. 특정산업에 대한 양측의 초기 입장보고서 요약

(자동차)

- 미·EU 간 자동차 관련 규제는 안전 및 건강, 환경보호 측면에서 추구하는 바가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상호인정 또는 규제조정을 통해 양 시장에서 양립할 수 있는 규제 여건을 만들어 낼 경우 효율성 제고 및 비용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미국과 EU 역내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양측의 합의를 통한 공동 규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비록 상이한 규제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미·EU 간 규제의 목적과 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량 및 부품, 기술요건, 마케팅 조건 등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기존 미·EU 간에 체결한 합의(1998년 UNECE)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신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상호인정 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임.

(화학약품)

- 미·EU 간 화학규제는 근본원칙이 상이하어 상호인정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임.
- EU는 화학규제인 REACH를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미국의 독성화학물질관리제도(TSCA)는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예상되는 수정안도 여전히 REACH와 큰 차이가 있음(REACH와 달리 TSCA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 하지 않음).
- 따라서 TTIP를 통한 EU의 전략은 규제협력 쪽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미국의 규제와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방법, 분류 및 등급산정과 더불어 호르몬, 나노물질, 독성 혼합물과 같은 신규물질에 대한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

- 미·EU 간 의약품 관련 규제협력체제는 이미 양자적 차원의 채널 및 임상실험국제표준화작업(ICH)과 같은 다자적 차원의 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잘 갖춰져 있으므로, TTIP는 기존의 협력 채널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어야 함.
- 양측의 협의는 의약품 인증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증 및 검사당국의 가용자원(특히 정보)을 공유하는 등 필수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TTIP 협상 시 의약품 분야의 의제를 무역증진, 경제성장 및 고용증진의 목표들과 결합시켜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지원을 이끌어내야 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11) European Commission(2013),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 (투명성) 미·EU 양측은 TBT·SPS 통보절차에 있어 투명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초안 합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양측의 통보 관행이 상당 부분 달라 아직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 양국은 법률 입안 통보와 이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의견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간 대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기술 규정) 기술규정을 제·개정하는 방식에 있어 EU는 단일체로 하향식(top-down) 형식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독립적인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가능한 상향식(bottom-up) 형식으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가짐.

- EU는 단일체로 EU 차원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라 EU 회원국 내 시장 접근이 허용되며, EU 내 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EU 조약문에 의거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상호인정원칙에 의해 개별 회원국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됨.
-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 내 주정부가 주(State) 단위의 영역 안에서 기술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 미국 연방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
- TTIP 보고서에 의하면 EU 수출업자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여러 규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제품수출 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화) EU 측은 국제기준 확립체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반면, 미국은 신규 규제 제정 시 연방 내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법과 정책방향이 일치하는 선에서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등 양측은 표준화 수립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보임.

- EU 측은 ‘건강, 안전 및 환경 이슈와 관련된 필수 요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새로운 접근 지침(New Approach Directives)’을 통해 유럽 규격을 장려하고자 함.
- EU의 경우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TSI) 3개의 유럽표준화기구(ESOs)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개된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세계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들이 표준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치적 노력을 가함.
- 한편 미국 측 관계자들은 전략적 측면(Strategic Challenge)에서의 EU 규제 표준화 설정 방법론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또한 EU 규제 제정 기관의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찬반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익을 제기함.
- 미국 내 수출업자는 EU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대안적인 표준을 입증하는 데 비용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며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정한 표준이 EU의 필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주장함.
- USTR에서 발표한 TBT 보고서(2010년 3월)에 따르면 유럽 표준 기관은 해당 법령 중 ‘필수 요건(essential

requirement)’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을 발전시켜 조화를 이루고 국제 표준 기관과 협력하며 다른 제3국가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제후를 맺기 위해 유럽 표준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EU 표준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아울러 EU 표준의 국제화는 EU와 경쟁하는 제3국 시장에서 미국 생산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적합성 평가) 미국과 EU는 소비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보호 수준에 대한 고려는 유사하나, 양측 규제기관은 특정 제품과 리스크의 적합성 평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해옴.

- 미국에서는 여러 제품에 대해 제3기관이 검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EU는 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 안전을 요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표준적합성자체선언(SDoC)만을 요구하며, 그 외 분야에서는 제품별 분류법 차이로 인해 적합성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 (화학분야) EU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하는 등 미국에 비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유해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하에 시행되는 미국 측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가짐.
- (화장품분야) EU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미국은 특별히 시행되는 규제가 없거나 일반 의약품(OTCs)으로 분류하여 때로는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
- EU는 저위험 제품군에 대해 제3자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대신 제조업자가 스스로 연구소를 선택하여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표준적합성자체선언제도(SDoC)와 같은 무역 촉진 가능한 대안을 선호함.

■ 상기 주요 쟁점으로 미루어볼 때,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은 범대서양 시장 내 장애물로 작용하는 기술 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제거하고 규제의 정합성 또는 규제간 호환성을 증진시킬 경우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함.¹²⁾

- 각국의 규정 체제 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양측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만일 양측 모두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일 경우 합의하에 공통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힘.
- 기술적 요구조건의 경우, 가능하다면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 내에서 세계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일부 TTIP 지지자들은 양측 자국민에 대한 소비자후생 및 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동 규제체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제시함.

12) European Commission(2013),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 양측의 규제 가능한 권리(right to regulate)를 유지함과 동시에 1) '1회 검증(tested once)' 원칙(양측 중 한 곳에서 제품시험을 통과하면 상대국 규제기관에서도 유효하도록 합의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중복되는 시험 폐지, 2)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제거함에 있어 범대서양 협력 체제를 창설, 3) 새 제품과 기존 제품의 기준원칙에 대한 상호 운영 가능성을 아우르는 공동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 4) 향후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제도 발전, 5) 정해진 기간 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요청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도록 권장함.¹³⁾

3. 맺음말

■ 2013년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에서는 수입규제 및 수출제한이 주요 통상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 TBT 및 SPS가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음.

-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세계 GDP의 45%, 세계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 간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TTIP에서의 TBT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 표준 및 기준이 합의될 경우, 양측이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 대미/대EU 수출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를 동시에 체결한 유일한 OECD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EU 간 TTIP 협상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조업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의 대미/대EU 수출에 있어 TTIP에서의 TBT 관련 규정은 종래의 미국, EU간 제조업 수출입뿐 아니라 한국의 대외통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가 상호협약 하에 산업별 규제 호환성 및 국제표준을 새로이 제·개정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해 생산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복되는 규제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됨. **KIEP**

13) John F. Morrall III(2013), "Determining Compatible Regulatory Regimes between the U.S. and the EU"에서 발췌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